

채점세부기준표와 첨삭표

이 름 : ○ ○ ○

문제	목차	개별점수기준
제1문 문제 1 (20점)	헌법소원 심판대상 범위 확정 (점/6점)	<p>1. 헌법소원의 대상의 의의 (점/2점) :</p> <p>① 현재법 제68조 제1항 (점/1점)</p> <p>②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불리한 변화초래 (점/1점)</p> <p>2.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대상범위 확정 (점/2점) :</p> <p>① 시행규칙 [별표11] : (점/1점)</p> <p>② 시행규칙 부칙제3조 제3항 : (점/1점)</p> <p>3.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대상범위 확정 (점/2점)</p> <p>① B시 인형뽑기 기구 설치조례 제3조 제3항 : (점/1점)</p> <p>② 부칙 제2조 : (점/1점)</p>
	법적 관련성 (점/9점)	<p>1. 관련법리</p> <p>2. 현재성 (점/3점) :</p> <p>1) 관련법리 (점/1점) : 기본권 침해가 확실 예상되는 경우 현재성</p> <p>2)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(점/1점)</p> <p>3)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(점/1점)</p> <p>3. 자기관련성 (점/3점) :</p> <p>1) 의의 (점/1점) :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</p> <p>2)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(점/1점)</p> <p>3)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(점/1점)</p> <p>4. 직접성 (점/3점) :</p> <p>1) 관련법리 (점/1점) : 기본권 침해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</p> <p>2)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</p> <p>3)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</p>
	청구기간 (점/5점)	<p>1. 헌법재판소법 조항 (점/1점) :</p> <p>2. 판례 (점/1점) :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될 뿐,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기간 도과는 문제 발생은 안 됨</p>

		<p>3.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(점/2점)</p> <p>① 유예기간 경과한 날이 기산점이므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날은 2025.1.1.</p> <p>② 안날은 2024. 10.1.</p> <p>4.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(점/1점) :</p> <p>B시 조례는 2025년 1월 시행예정이므로 도과가능성 없음</p>
	<p>쟁점의 정리 (점/2점)</p>	<p>심판대상이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인지가 문제가 됨</p>
	<p>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(점/4점)</p>	<p>1.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(점/2점)</p> <p>2. 헌법 제13조 제2항은 진정소급입법만 금지함 (점/2점)</p>
<p>제1문 문제 2 (1) (15점)</p>	<p>사안의 해결 (점/8점)</p>	<p>1. 이 사건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(점/5점)</p> <p>① 부진정소급입법임을 논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채점</p> <p>② 장래에 허가와 폐쇄의무만 부과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</p> <p>2. B시 조례 부칙 제2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(점/3점)</p> <p>① 부진정소급입법을 논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채점</p> <p>② 장래에 설치금지, 장래에 폐기 의무만 부과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</p>
	<p>결론 (점/1점)</p>	<p>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음</p>
<p>제1문 문제 2 (2) (35점)</p>	<p>쟁점의 정리 (점/5점)</p>	<p>1. 제한되는 기본권 (점/5점) :</p> <p>① 직업의 자유의 의의 (점/2점)</p> <p>② 인형뽑기업이 직업에서 해당함 (점/1점)</p> <p>③ 인형뽑기업 허가제와 조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 (점/2점)</p> <p>* 부칙조항이 재산권 제한이라는 추가한 경우 (가점 2점)</p> <p>2. 심사기준 *가점2점 : 법률유보, 과잉금지원칙</p>

<p>이 사건 시행규칙의 기본권 침해여부 (점/20점)</p>	<p>1.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(점/8점) :</p> <p>1) 법률유보의 의의 (점/3점) :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의의, 판례가 본질성 이론을 취하고 있음.</p> <p>2) 위반여부</p> <p>① 게임산업법에서 이법이 적용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기준을 게임물로 제시하고 있음 (점/1점)</p> <p>② 사행성과 중독성이 있는 게임물인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은 아니므로 시행규칙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아님 (점/2점)</p> <p>③ 인형뽑기가 사행성과 중독성이 있는 게임물이므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· 유기기구에서 삭제하고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폐쇄하도록 한 것은 법률의 위임을 일탈하지 않음 (점/2점)</p> <p>2. 과잉금지원칙 (점/12점) :</p> <p>1) 목적의 정당성 (점/1점) : 사행성조장, 게임중독예방</p> <p>2) 수단의 적합성 (점/1점) : 적합한 수단</p> <p>3) 피해의 최소성(점/6점)</p> <p>① 인형뽑기를 생략한 부분(점/3점) :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인정, 목적 달성이 가능한 더 완화된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움.</p> <p>② 이 사건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(점/3점): 임대차기간을 고려하면 3개월 유예기간은 너무 짧음. 위반으로 보지 않은 답안도 유예기간이 짧지 않다고 논증한 경우 동일점수 부여함.</p> <p>4) 법익균형성 (점/4점)</p> <p>① 인형뽑기를 생략한 부분(점/2점)</p> <p>② 이 사건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(점/2점): 위반으로 보지 않은 답안도 침해되는 정도보다 공익이 크다고 논증한 경우 동일점수 부여</p>
<p>이 사건 B시 조례 (점/10점)</p>	<p>1. 법률우위원칙위반여부 (점/4점)</p> <p>①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의 법령 우위원칙(점/1점)</p> <p>② 인형뽑기를 전면금지한 조례는 게임산업법 제26조 제2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(점/3점)</p> <p>2.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(점/6점) :</p>

제1문 문제 3 (1) (10점)	쟁점(점/1점) 예외적 허가 (예외적 승인) (점/5점) 재량행위 (점/4점)	1) 목적의 정당성(점/1점) 2) 수단의 적합성(점/1점) 3) 피해의 최소성(점/3점) : 고가경품 제한, 시간제한, 학교주변과 주택주변한정금지와 같은 더 완화된 수단으로도 목적 달성을 가능함에도 전면금지는 최소성원칙에 위반됨 4) 법익균형성(점/1점)
	쟁점 (점/2점)	예방적 금지심판과 예방적 금지소송
	행정심판법 예방적 금지심판 허용여부 (점/8점)	1. 의의 (점/1점) : 2. 현행 행정심판법 (점/2점) : 3. 의무이행심판과의 구별 *가점 2점 4. 학설 (점/2점) : 5. 검토 (점/3점) :
제1문 문제 3 (2) (20점)	예방적 금지소송의 허용여부 (점/10점)	1. 예방적 금지소송의 개념 (점/1점) : 2. 현행 행정소송법 (점/1점) : 3.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(점/5점) : ① 부정설(점/2점) ② 긍정설(점/2점) ③ 판례(점/1점) 4. 검토 (점/3점) :

제2문 문제 1 (1) (10점)	산업단지개발계획 의 법적 성질 (점/5점)	<p>1. 처분의 의의 (점/2점)</p> <p>① 행정소송법(점/1점) ② 권리와 의무에 변동(점/1점)</p> <p>2.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 (점/3점) :</p> <p>①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토지사용권의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결정, 재산권의 직접 변동(2점) ② 구속적 행정계획, 일반처분</p>
	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청구권 유무 (점/5점)	<p>1. 쟁점 *가점2점</p> <p>2. 행정계획변경청구권(점/1점) : 원칙은 부정되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예외적 인정</p> <p>3. 토지소유자 甲의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청구권 (점/4점)</p> <p>① 토지소유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청구권 인정(점/3점) ② 현법상 재산권 근거하여 청구권 인정(점/1점)</p>
제2문 문제 1 (2) (20점)	쟁점의 정리 (점/1점)	
	원고적격 (점/5점)	<p>1. 원고적격의 의의 (점/1점) :</p> <p>2. 법률상 이익 (점/4점) :</p> <p>1) 행정소송법 조항 (점/1점) 2) 학설(점/2점) 3) 판례(점/1점)</p>
제2문 문제 1 (2) (20점)	사안의 해결 (점/14점)	<p>1. 수도원의 당사자능력 가점2점 :</p> <p>2. 乙 수도원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내 주민인지 여부 (점/8점)</p> <p>1)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내 주민의 원고적격 (점/2점) 2) 乙 수도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민인지 여부</p> <p>① 쟁점정리(점/2점) : 수도원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내 주민인지 여부 ② 학설 * 가점2점 ③ 판례 (점/2점) : 수녀원 판례에서 부정 ④ 소결론 (점/2점) : 재단법인인 수도원은 환경상 이익을 누릴 수 없음.</p>

제2문 문제 2 (25점)	<p>3. 乙 수도원이 수도사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(점/5점)</p> <p>1) 관련 법리 (점/3점) : 제3자의 경우 직접 법적으로 이익을 침해받아야 가능, 단체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간접적인 침해만 가능</p> <p>2) 사안의 경우(점/2점) : 수도사의 환경상 이익 침해로 수도원 환경상 이익이 침해 침해는 간접적임.</p>
	<p>결론 (점/1점)</p> <p>원고적격 부정</p>
	<p>쟁점의 정리 (점/3점)</p>
	<p>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(점/9점)</p> <p>1.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 (점/3점) : 대리, 행정행위</p> <p>2. 수용재결의 공정력 (점/5점) :</p> <p>1) 의의(점/1점)</p> <p>2) 행정기본법 조항(점/2점)</p> <p>3) 학설과 판례</p> <p>4) 결론</p>
제2문 문제 3 (15점)	<p>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(점/10점)</p> <p>1.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 (점/2점) :</p> <p>2. 관련 법리 (점/5점) :</p> <p>1) 처분의 무효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(점/2점)</p> <p>2) 처분의 취소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(점/3점)</p> <p>3. 사안의 해결 (점/3점)</p> <p>수용재결에 무효가 아닌 하자만 있는 경우 심리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</p>
	<p>결론 (점/2점)</p> <p>공정력인정, 하자를 심리 판단할 수 없음</p>
	<p>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 (점/4점)</p> <p>1. 근거 법조항 (점/1점)</p> <p>2. 형성권(점/3점) :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채점</p>
	<p>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을</p> <p>1. 소송상 권리구제 방법 (점/6점)</p> <p>잔여지수용청구권이 형성권이므로 보상금증감청구 소송이다 논증을 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채점</p>

제2문 문제 4 (30점)	한 경우 소송상 권리구제 방법 (점/10점)	2. 보상금증감구소송 (점/4점) 1) 소송유형 : 형식적 당사자소송 2) 피고 : 사업시행자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
	사안의 해결 (점/1점)	B시를 피고로 하여 ‘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’을 제기
	쟁점의 정리 (점/2점)	丙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, 본회의 전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표,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,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내용에 면책특권적용여부
	면책특권의 의의와 요건 (점/4점)	1. 헌법상 근거 (점/1점) 2. 의의 (점/2점) 3. 요건 (점/1점)
	사안의 해결 (점/22점)	1. 주체요건 : 국회의원 (점/1점) : 2. 국회에서 (점/3점) : 3. 사실이 아닌 발언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(점/6점) 1) 관련 법리 (점/4점) 2) 사안의 경우 (점/2점) 4.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(점/12점) : (1)丙의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 (점/1점) (2)丙의 원내 기자실에서 한 기자들에게 한 발표 (점/6점) ① 관련법리 (점/3점) ② 사안의 해결 (점/3점) 3)丙이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행위 (점/5점) ① 학설 (점/2점) ② 판례 (점/1점) ③ 사안의 해결 (점/2점)
	결론(/2점)	

※ 황남기 합격캠프 긴급구조반

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황남기 공법 답안첨삭 및 1:1 심층상담

일정 및 시간	상담일자	1:1 상담시간 : 예약자에 한정 / 1시간당 1명	상담인원
	1/22일(수)	①13:00~14:00 ②14:00~15:00 ③15:00~16:00 ④16:00~17:00	4명
	1/23일(목)	①13:00~14:00 ②14:00~15:00 ③15:00~16:00 ④16:00~17:00	4명
	1/24일(금)	①13:00~14:00 ②14:00~15:00 ③15:00~16:00 ④16:00~17:00	4명
준비사항	1.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시험지 2. 가능하면 본인이 작성한 답안(복기) 등		
예약 및 문의사항	변호사시험 합격캠프 ☎ 02-3285-8840 최철승 원장 ☎ 010-5552-9431 카톡문의 : 황남기 공법 변호사합격캠프 (https://open.kakao.com/o/sBVethRe)		